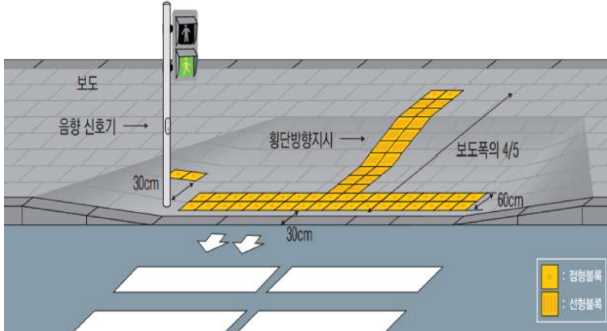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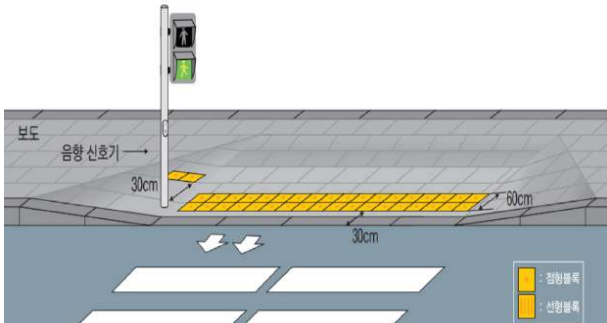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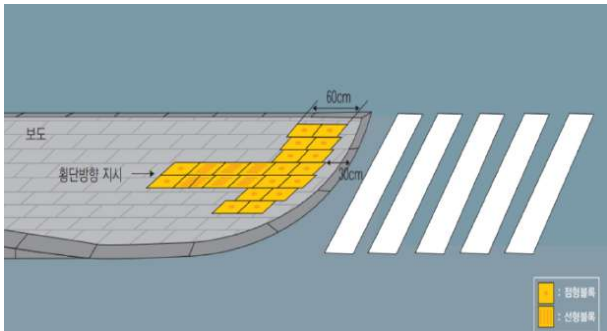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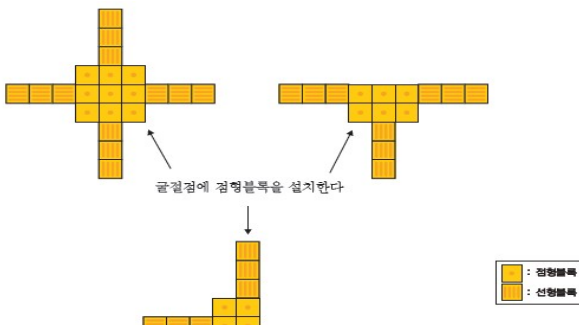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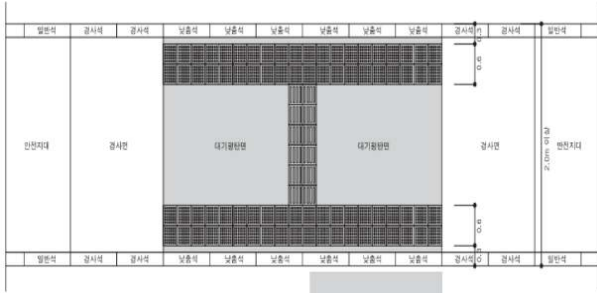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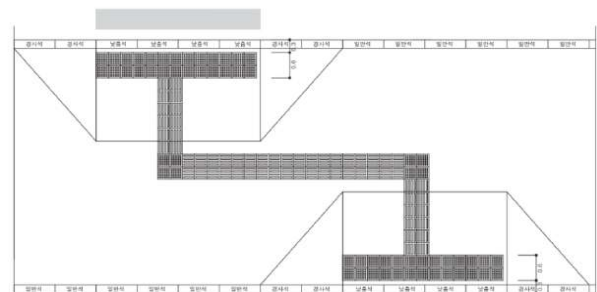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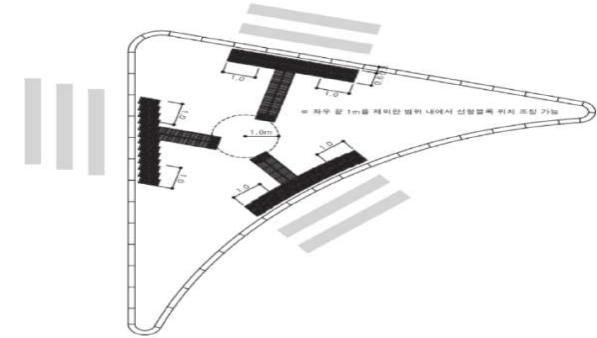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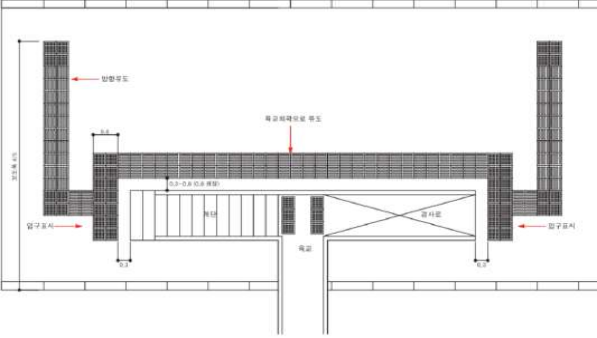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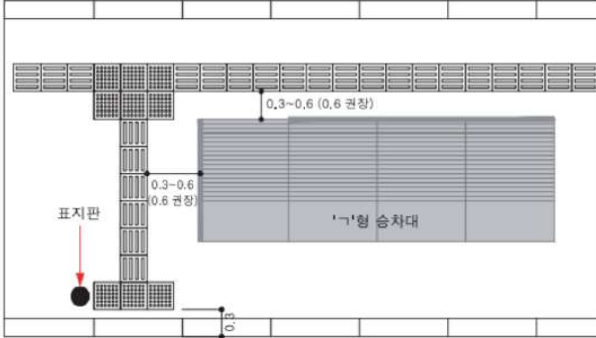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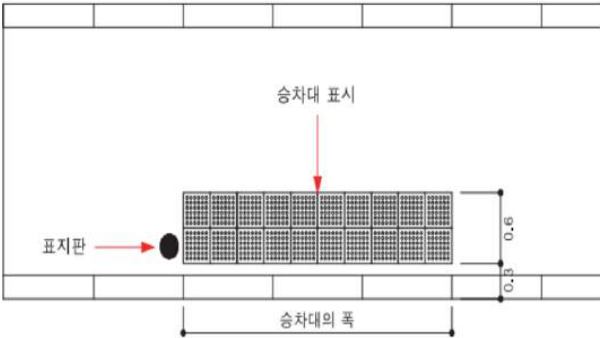


참고1 교통약자(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세부 예시

□ 장소별 이용 방해 예시

장소별 구분	이용방해 인정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횡단보도(기본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점형, 선형블록 경계선 침범 ② 선형블록 양쪽 60cm 이내 ③ 점형블록 횡단방향(대기) 30cm 이내 ④ 음향신호기 앞 점형블록 30cm 이내
<p style="text-align: center;">횡단보도(보도폭이 좁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점형, 선형블록 경계선 침범 ② 점형블록 횡단방향(대기) 30cm 이내 ③ 음향신호기 앞 점형블록 30cm 이내
<p style="text-align: center;">횡단보도(연석이 곡선부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점형, 선형블록 경계선 침범 ② 선형블록 양쪽 60cm 이내 단, 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 또는 구조물 존재 시 30cm 이내 ③ 점형블록 횡단방향(대기) 30cm 이내
<p style="text-align: center;">연속적인 선형블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점형, 선형블록 경계선 침범 ② 선형블록 양쪽 60cm 이내 단, 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 또는 구조물 존재 시 30cm 이내

장소별 구분	이용방해 인정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안전지대(횡단보도 일직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점형, 선형블록 경계선 침범 ② 선형블록 양쪽 60cm 이내 단, 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 또는 구조물 존재 시 30cm 이내
<p style="text-align: center;">안전지대(횡단보도 일직선 아닌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점형, 선형블록 경계선 침범 ② 선형블록 양쪽 60cm 이내 단, 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 또는 구조물 존재 시 30cm 이내 ③ 점형블록 횡단방향(대기) 30cm 이내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점형, 선형블록 경계선 침범 ② 선형블록 양쪽 60cm 이내 단, 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 또는 구조물 존재 시 30cm 이내 ③ 교통섬 중앙 블록 사이 반경 1m 이내 ④ 점형블록 횡단방향(대기) 30cm 이내
<p style="text-align: center;">육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점형, 선형블록 경계선 침범 ② 선형블록 양쪽 60cm 이내 단, 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 또는 구조물 존재 시 30cm 이내

장소별 구분	이용방해 인정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버스정류장(승차대 설치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점형, 선형블록 경계선 침범 ② 선형블록 양쪽 60cm 이내 단, 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 또는 구조물 존재 시 30cm 이내 ③ 점형블록 승차 방향 앞 30cm 이내
<p style="text-align: center;">버스정류장(승차대 미설치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점형, 선형블록 경계선 침범 ② 점형블록 승차 방향 앞 30cm 이내

□ 행위대상물별 이용 방해 시 민원처리 예시

행위대상물 방해 사례	민원처리 방법
	<p>【주정차 차량(점형블록 경계선 침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차 위반 계도(안내문·이동요청) ② 2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행위자 동일 시
	<p>【주정차 차량(선형블록 경계선 인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블록 경계선 양쪽 60cm 이내 시 ① 위반 시 계도(안내문·이동요청)

행위대상물 방해 사례	민원처리 방법
	<p>【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노상적치물 (점형블록 경계선 침범)】</p> <p>① 1차 위반 계도(안내문·이동요청) ② 2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행위자 동일 시</p>
	<p>【소유자 확인 불가능한 노상적치물】 - 위반 시 안내문 부착 및 현장 이동 조치</p>
	<p>【공유형 킥보드(PM)·자전거】</p> <p>① 위반 시 안내문 부착 및 대여업체 유예시간 내 이동 조치 요청 ② 유예시간 내 미정비시 견인 실시 - 견인료·보관료 부과(수원도시공사)</p>
	
	<p>【이륜차(충돌위험 발생 행위)】 - 선형블록 경계선 양쪽 60cm 이내 시</p> <p>① 위반 시 계도(안내문·이동요청)</p>

[관리번호]

안 내 문

해당 물건은 도로·여객시설의 **교통약자(장애인) 보도·주차 구역 이용 방해·훼손 행위**로 적발 되었으며, 안내문 확인 시 신속히 이동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적발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 적발장소 :

법 적 근 거	방 해 물 유 형
<input type="checkbox"/> 「교통약자법」 제11조 제2항 -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훼손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교통약자법」 제16조의3 제3항 -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차량
	<input type="checkbox"/> 옥외광고물
	<input type="checkbox"/> 노상적치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행위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 제2항·제16조의3 제3항·제33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특례시 교통정책과 ☎ 031-5191-2511

참고3 교통약자법 위반 사실 통보서(안)

교통약자법 위반행위 사실 통보서

- 대 상 자 :
- 주 소 :

귀하의 ○○○이 아래와 같이 교통약자법에 의해 법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며, 관련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 관련 사진		
위반대상	행위대상물(차량번호)	장 소 위 치 사 진
위반일시	년 월 일(시 분)	
위반장소		
방해물유형		
적용법조	교통약자법 제11조 제2항	
<input type="checkbox"/> 계 도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기한(20 . . . ~ 20 . . .)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기한 내 위반자가 증빙자료를 제출 시, 심의를 거쳐 과태료가 감경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수원시 교통정책과(직인생략)

참고5 의견진술 처리기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2조(별표3) 관련】

감 경 사 유	가 중 사 유
가) 위반행위가 교통사업자*,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 교통수단 운행, 여객시설 설치·운영하는자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대상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가) 위반행위가 교통사업자,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 과태료 면제 기준

구 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만 인정,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중인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등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혈액수송, 폐기물수집, 교통정리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관련 자료